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7월 2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72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고졸채용) ① 고졸인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학력,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. 다만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인재에서 제외한다.

② 공사는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하여 일반직 또는 업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고졸적합직무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고졸직원을 대상으로 후진학 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후진학

지원제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④ 군미필 고졸자 등의 군입대 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군제대 후 복직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.
- ⑤ 고졸채용 시 하향지원자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응시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, 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후 대졸자의 학력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다.
- ⑥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제·휴학·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재학하는 경우 임용일 이전에 중퇴해야 한다.
- ⑦ 고졸채용 임용자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일반직, 업무직들과 승진, 급여 등 제도운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의2(고졸채용) <신설></p>	<p>제3조의2(고졸채용) ① 고졸인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·학력,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. 다만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인재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② 공사는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하여 일반직 또는 업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고졸적합직무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고졸직원을 대상으로 후진학 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후진학 지원제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④ 군미필 고졸자 등의 군입대 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군제대 후 복직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.</p> <p>⑤ 고졸채용 시 하향지원자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응시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, 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후 대졸자의 학력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해고 될 수 있다.</p> <p>⑥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제·휴학·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재학하는 경우 임용일 이전에 중퇴해야 한다.</p> <p>⑦ 고졸채용 임용자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일반직, 업무직들과 승진, 급여 등 제도운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.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공기업 고졸인재 채용 가이드라인

1. 고졸인재 정의
2. 고졸적합직무 발굴
3. 채용방법
 - 1) 채용원칙
 - 2) 채용전형
 - 3) 하향지원 방지
 - 4) 군미필 고졸자 군입대 휴직과 복직에 따른 처리
4. 직급 및 승진·경력개발
5. 후진학 지원제도